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5. 9.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활동비 지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나.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1조~제4조, 제4조의3~제4조의13, 제5조~제22조, 제24조, 제3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를 “「노인복지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기관”을 “운영 기관”으로,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을 “노인지원 봉사 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자리를”을 “일자리 사업을”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시장”이”로, “사회 참여 활동”을 “사회참여활동”으로, “본”을 “이”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구미시”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인관계”를 “노인 관계”로, “시설입소”를 “시설 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공공시설 이용료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구미시지회”를 “구미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로,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노인

지회”를 “시 지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시 지회장·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이용자 지도 및 회원 관리

4. 경로당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5.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목표”를 “기

본 목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전시책”을 “발전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달방안”을 “조달 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4조의4 중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관계기관 간”을 “관계기관 간”으로 한다.

제4조의6 중 “평가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를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함”을 “마련함”으로,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건강생활실천”을 “건강 생활 실천”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환경조성”을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만성퇴행성질환”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노인환자”를 “노인 환자”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복지기관”을 “복지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경제상태”를 “경제 상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양실태”를 “부양 실태”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최되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미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4조의9제3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회의진행”을 “회의 진행”으로,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 업무 담

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11제2항 중 “소집요구”를 “소집 요구”로 한다.

제4조의13 중 “관계전문”을 “관계 전문”으로,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개별사무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별 사무 조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부운영규정”을 “내부 운영규정”으로, “수탁사무”를 “수탁 사무”로, “자체운영”을 “자체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제7조제1호 “전염성질환”을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8조 중 “법23조제2항”을 “법 제2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사업수행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운영”을 “사업 운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선정 할”을 “선정할”로 한다.

제11조 중 “프로그램과정”을 “프로그램 과정”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에 관련계획”을 “시 지회에 관련 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사업비”를 “환경개선 사업비”로, “한 한 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 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를 “이용 인원, 시설 규모, 입주 형태, 재정 상황, 운영 관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권익보호증진”을 “권익 보호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실태”를 “운영 실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기행위”를 “유기 행위”로, “판단 될”을 “판단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기준”을 “등록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택지개발”을

“택지 개발”로, “뉴타운사업”을 “뉴타운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용시간”을 “이용 시간”으로, “월3회 이상 발견 된”을 “월 3회 이상 발견된”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차등지원”을 “차등 지원”으로, “지원물품”을 “지원 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 서비스”로, “기능강화”를 “기능 강화”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프로그램운영”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증진”을 “문화 증진”으로 한다.

제21조 중 “노인복지지원”을 “노인복지 지원”으로, “사업종료”를 “사업 종료”로, “사업실적”을 “사업 실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변경 하였”을 “변경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노인복지지원”을 “노인복지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등 에서”를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예절기관”을 “전통예절 기관”으로, “청소년인성”을 “청소년 인성”으로 한다.

제30조 중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인복지법 제4조</u>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노인복지법</u>」 제4조----- ----- ----- -----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노인복지시설</u>”이라 함은 <u>노인복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p> <p>2. “<u>경로당</u>”이란 <u>법</u> 제37조 및 같은 <u>법</u>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u>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u>을 말한다.</p> <p>3. “<u>노인관계기관</u>”이란 <u>법</u>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u>운영기관</u>,</p> | <p>제2조(정의) ----- ----- -----</p> <p>1. “<u>노인복지시설</u>”----- 「<u>노인복지법</u>」----- “<u>법</u>”----- ----- ----- ----- ----- -----</p> <p>2. ----- -----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p> <p>3. ----- ----- ----- <u>운영 기관</u></p> |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 7.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그 밖의 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게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 노인지원 봉사 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

4. -----

----- 일자리 사업을 -----
-----.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 “시장”이----- 사회 참여활동 -----
----- 이 -----
-----.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

---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 . --- 노인 관계 -----
--- 시설 입소 -----
-----.

② -----
----- 공공 시설 이용료의 -----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2(노인지회 지원)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지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 7. (생략)

③ 시장은 노인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4조의2(노인지회 지원) ① -----

----- 구미시지회
(이하 “시 지회”라 한다)-----

----- 업무수행-----
-----.

② -----

-----.

1. 시 지회 -----
--

2. ~ 7. (현행과 같음)

③ ----- 시 지회의 -----

-----.

④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시 지회장·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이
용자 지도 및 회원 관리
4. 경로당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활동 지원
5.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기본계획수립)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생략)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은 4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의4(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
-----.

1. ----- 기본 목표-----

2. ----- 발전 시책-----

3. (현행과 같음)

4. -----
----- 조달 방안 -----

5. (현행과 같음)

6. -- 밖에 -----

-----.

제4조의4(업무의 협조) -----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기관 간 -----
-----.

제4조의6(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4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
회에 보고한다.

제4조의7(노인복지 지원시책) 시
장은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강구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에 따라 수립한다.

1. 건강증진 사업

가.·나. (생략)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
생활실천 사업

라.·마. (생략)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
성 지원

사. (생략)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을 가진 노인의 관리

나. ~ 라. (생략)

마.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
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제4조의6(시행계획 수립) -----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4조의7(노인복지 지원시책) --
----- 마련
함-----
지원 대상-----.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건강
생활 실천 ---

라.·마. (현행과 같음)

바. ----- 환경 조
성 ---

사. (현행과 같음)

2. -----

가. ----- 만성퇴행성 질환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노인 환자 -----

바. ----- 복지 기관--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다.·라. (생략)

4.·5. (생략)

제4조의8(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

1. 구미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미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미시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4조의9(구성) ①·② (생략)

3. -----

가. ----- 경제상태 -----

나. ----- 부양 실태 -----

다.·라.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제4조의8(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

1. 시 -----

2. 시 -----

3. 시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9(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노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3. ~ 5. (생략)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4조의11(회의) ① (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생략)

제4조의1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업무 담당 -----
3. ~ 5. (현행과 같음)

④ ----- 하되,
한 차례만 -----
-----.

⑤ ----- 회의 진행-----
-----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

제4조의11(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집 요구-----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13(수당 등) -----

----- 관계 전문-----
----- 범위에서 「구미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

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사무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2. (생략)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별 사무 조례 등

-----.

④ -----
----- 내부 운영규정-----

----- 수탁 사무-----
----- 자체 운영 -----.

제6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2. (현행과 같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
· 사상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
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
하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
당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
받는 자

8. (생략)

④ (생략)

제7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
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
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2. ~ 4. (생략)

제8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
장은 법23조제2항에 따라 노인
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상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5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
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
된 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자의 제한) -----

-----.

1. 전염성 질환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
--- 법 제23조-----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8. (생략)

제10조(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해 경영 및 기술 등 노

-----.

제9조(사업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 7. 사업수행기관 -----
-- 사업 운영-----
--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생업지원) -----

----- 10 이
상 -----
선정할 -----.

제11조(평생교육의 활용) -----

----- 프로그램 과정-----

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
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
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
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노인회구미시
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2. (생략)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

-----.

제13조(예산지원) -----
----- 관련 기관

-----.

제1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 노인복지 서
비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시 지회에 관련 계획

-----.

제15조(경로당 지원)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환경개선 사업비

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
리유지에 한 한다)

4.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
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
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
독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
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 3. (생 략)

4. 회칙 준수와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관리

5.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6.·7. (생 략)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
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지원
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
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

----- 한정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② ----- 이용 인
원, 시설 규모, 입주 형태, 재정
상황, 운영 관리 -----
-----.

제1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
독 등) ① -----

----- 다음 연도 -----
-----.

1. ~ 3. (현행과 같음)

4. ----- 회의
개최 -----

5. ----- 권익 보호 증진
--

6.·7. (현행과 같음)

② ----- 운영 실태

-----.

1. ----- 유기 행위 -----

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③ 시장은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시상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 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

----- 판단될 -----

2. ----- 등록 기준-----

3. 택지 개발----- 뉴타운 사업 -----

4. ----- 이용 시간 -----
----- 월 3회 이상 발견된 --

③ -----
----- 차등 지원
----- 지원 물품-----

제1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
----- 노인복지 서비스-----
----- 기능 강화-----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금 지원) -----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 (생략)

제21조(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 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

-----.

1. (현행과 같음)
2. -----
----- 프로그램 운영 -----
3. (현행과 같음)
4. -----
문화 증진 -----
--
5. (현행과 같음)

제21조(결산보고 등) -----
----- 노인복지 지원 -----
----- 사업 종료 -----
----- 사업 실적-----

--.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5. (생략)

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24조(효행교육장려) ① 시장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통예절기관 등에 위탁해 청소년인성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경 하였-----

5. (현행과 같음)

6. 노인복지 지원 -----

제24조(효행교육장려) ① -----

--- 등에서 -----
-----.

② -----

-- 전통예절 기관 -----
청소년 인성 -----
-----.

제30조(준용) -----
----- 「구미시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 (생략)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의2제5항(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구미시 지회장,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함에 따른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회장(1명) 활동비 월 40만원, 분회장(25명) 활동비 월 10만원
 - '25년 지급기준에 따라 추계
- 경로당 회장 활동비 월 3만원(타 지자체 활동비 금액 검토)
 - * '26년 경로당 개소수 431개 추정(연평균 3개소 증가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연도 | | | | | 합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세출 | ○ 활동비 (지회장) | 4,800 | 4,800 | 4,800 | 4,800 | 4,800 | 24,000 |
| | ○ 활동비 (분회장)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 | ○ 활동비 (경로당회장) | 155,160 | 156,240 | 157,320 | 158,400 | 159,480 | 786,600 |
| □ 총 비용 | | 189,960 | 191,040 | 192,120 | 193,200 | 194,280 | 960,6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시 비 | 189,960 | 191,040 | 192,120 | 193,200 | 194,280 | 960,600 |
| 민 간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189,960 | 191,040 | 192,120 | 193,200 | 194,280 | 960,600 |

5.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향후 활동비 상승 및 경로당 추가 건립에 따른 경로당 회장 수 증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 김현정(☎480-515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천원) |
|------|--------------|-----------------------------|
| 계 | | 960,600 |
| 1차년도 | ○ 활동비(지 회장) | 400,000원×1명×12월 4,800 |
| | ○ 활동비(분 회장) | 100,000원×25명×12월 30,000 |
| | ○ 활동비(경로당회장) | 30,000원×431명×12월 155,160 |
| 2차년도 | ○ 활동비(지 회장) | 400,000원×1명×12월 4,800 |
| | ○ 활동비(분 회장) | 100,000원×25명×12월 30,000 |
| | ○ 활동비(경로당회장) | 30,000원×434명×12월 156,240 |
| 3차년도 | ○ 활동비(지 회장) | 400,000원×1명×12월 4,800 |
| | ○ 활동비(분 회장) | 100,000원×25명×12월 30,000 |
| | ○ 활동비(경로당회장) | 30,000원×437명×12월 157,320 |
| 4차년도 | ○ 활동비(지 회장) | 400,000원×1명×12월 4,800 |
| | ○ 활동비(분 회장) | 100,000원×25명×12월 30,000 |
| | ○ 활동비(경로당회장) | 30,000원×440명×12월 158,400 |
| 5차년도 | ○ 활동비(지 회장) | 400,000원×1명×12월 4,800 |
| | ○ 활동비(분 회장) | 100,000원×25명×12월 30,000 |
| | ○ 활동비(경로당회장) | 30,000원×443명×12월 159,480 |

| 소 관 부 서 | | 어르신복지과 |
|-------------|-------|---------------------|
| 입 안 자 | 과 장 | 최 창 수 |
| | 팀 장 | 김 율 자 |
| | 담 당 자 | 김 현 정 (480-5154) |